# 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신재영	690915-*****		

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	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	
결길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	
01월	358,740	46,450	0	0	
02월	358,740	46,450	0	0	
03월	358,740	46,450	0	0	
04월	333,050	43,130	0	0	
05월	333,050	43,130	0	0	
06월	333,050	43,130	0	0	
07월	333,050	43,130	0	0	
08월	333,050	43,130	0	0	
09월	333,050	43,130	0	0	
10월	871,440	112,890	0	0	
11월	97,110	12,510	0	0	
12월	159,520	20,650	0	0	
연말정산	-220,470	-28,230			
합계	3,982,120	515,950	0	0	
총합계				4,498,070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:기본내역 [고용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신재영	690915-*****

# ■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(단위:원)

월별	고지금액
01월	91,070
02월	91,070
03월	91,070
04월	6,310
05월	84,550
06월	84,550
07월	84,550
08월	84,550
09월	84,550
10월	0
11월	245,940
12월	40,500
합계	988,710

- 1. 고지금액: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2.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3.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4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신재영	690915-*****	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265,500	0
02월	265,500	0
03월	265,500	0
04월	265,500	0
05월	265,500	0
06월	265,500	0
07월	277,650	0
08월	277,650	0
09월	277,650	0
10월	0	0
11월	0	0
12월	202,5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2,628,450	0
	총합계	2,628,45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	(무) 올바른 어린이보험2004.2				
보장성	116-81-03752		616695**	***	010719-*****	신승호	744,840
	주식회사 케이ㅂ	손해보험	(무)KB 운전자보험	(무)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			
보장성	202-81-48	370	202207**	***	690915-*****	신재영	180,000
	우정사업본부		(무)실손1종	(무)실손1종종합			
보장성	101-83-02925		701474**	***	690915-*****	신재영	1,000,360
	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		무) KB착한	정기			
보장성	120-81-39185		114304****		690915-*****	신재영	156,000
	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		무) toss착한암(with KB생명) 2				
보장성	120-81-39	185	122764****		690915-****	신재영	399,96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신재영	690915-*****	

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번	[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 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수익자)		
	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		무배당 건강명의 41	대질병진단보			
보장성	220-88-52643		202002**	***	690915-****	신재영	655,500
	라이나생명보험(주)		무배당THE든든한치	아보험II(갱신			
보장성	104-81-85	673	300114**	***	690915-*****	신재영	646,200
	삼성화재해상보험 ( 주 )		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				
보장성	202-81-45617		124Z24**	124Z24****		정영희	1,633,030
	삼성화재해상보험 (주)		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				
보장성	202-81-45	617	124Y17****		690915-*****	신재영	716,220
	인별합계금액		6,132,13			6,132,110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선정례	490704-****	

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<u>선</u> 호 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현대해상화재보험 ( 주 )		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(Hi1				
보장성	102-81-32	2035	L01936****		490704-****	선정례	235,200
	현대해상화재보험 ( 주 )		하이카 개인용				
보장성	102-81-32035		M20247****		490704-****	선정례	1,265,360
	인별합계금액						1,500,56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승호	010719-*****

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:	호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삼성화재해상보	험(주)	무배당 삼성화재 디	<b>나이렉트</b> 실손			
보장성	202-81-45	617	520209****		010719-*****	신승호	138,636
	인별합계금액		1				138,636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4-02-48***	서****	일반	80,000
**1-08-78***	서****	일반	120,000
**4-31-01***	□****	일반	125,300
**4-90-33***	연****	일반	146,700
**4-90-66***	현****	일반	6,500
**9-90-20***	인****	일반	65,000
**4-14-57***	멘****	일반	17,610
**8-10-00***	서****	일반	9,000
**8-64-00***	카****	일반	52,300
**9-30-81***	<b>슈****</b>	일반	10,000
**0-15-00***	퍼****	일반	20,300
**6-93-01***	<u>^</u> ****	일반	29,000
**2-94-01***	웃****	일반	25,300
**1-58-00***	푸****	일반	5,2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신재영	690915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4-02-03***	다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242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712,21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242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954,21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9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신화용	380915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1-91-88***	젠****	일반	1,410,400
**1-08-64***	튼****	일반	421,600
**2-11-94***	건****	일반	55,600
**0-15-88***	<u>څ****</u>	일반	18,300
**1-91-92***	다****	일반	470,350
**1-90-36***	동****	일반	4,700
**2-35-81***	라****	일반	12,600
**1-90-25***	고****	일반	34,600
**4-11-71***	백****	일반	23,000
**1-82-16***	<u>o</u>  ****	일반	9,500
**3-10-00***	솔****	일반	3,900
**7-40-76***	종****	일반	244,200
**7-49-00***	연****	일반	17,800
**6-06-02***	송****	일반	17,2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0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신화용	380915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743,75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743,75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1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남호	080814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1-08-78***	서****	일반	33,540
**4-31-01***	□****	일반	47,800
**8-94-04***	세****	일반	15,300
**8-64-00***	카****	일반	35,700
**9-30-81***	<b>슈****</b>	일반	800,000
**6-08-92***	행****	일반	5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937,94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937,94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2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덕희	401203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3-82-05***	삼****	일반	232,000
**9-92-46***	<u>^</u> ****	일반	142,100
**8-13-91***	한****	일반	102,300
**0-04-09***	대****	일반	385,367
**9-92-36***	한****	일반	220,700
**9-96-04***	한****	일반	24,100
**8-90-69***	전****	일반	107,700
**9-96-08***	한****	일반	571,900
**9-91-58***	연****	일반	430,200
**9-33-58***	<b>밝****</b>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40,000
**6-27-00***	중****	일반	7,020
**2-65-00***	현****	일반	38,100
**9-06-01***	조****	일반	18,600
**8-48-00***	EH****	일반	2,0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덕희	401203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5-63-00***	연*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31,700
**3-05-02***	참****	일반	2,200
**3-24-01***	연****	일반	65,6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381,587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40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421,587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선정례	490704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8-13-91***	한****	일반	55,800
**0-04-09***	대****	일반	236,300
**9-82-03***	차****	일반	40,250
**9-92-36***	한****	일반	207,680
**9-96-04***	한****	일반	48,300
**5-17-72***	김****	일반	32,300
**8-90-69***	전****	일반	65,800
**9-96-08***	한****	일반	21,600
**9-39-39***	코****	일반	13,400
**9-91-58***	연****	일반	19,900
**9-91-16***	연****	일반	13,900
**9-31-55***	분****	일반	239,500
**9-33-58***	밝****	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	50,000
**9-06-01***	조****	일반	55,8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선정례	490704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6-34-00***	진****	일반	18,600
**5-63-00***	연*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1,000
**3-24-01***	연****	일반	1,0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071,13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50,00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121,13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6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승호	010719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4-91-05***	연****	일반	9,700
**4-13-17***	두****	일반	6,100
**7-90-79***	제****	일반	13,000
**4-31-01***	□****	일반	17,600
**4-31-05***	서****	일반	3,800
**1-02-80***	제*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6,400
**0-09-63***	건****	일반	3,900
**2-58-00***	블****	일반	80,000
**8-64-00***	카****	일반	20,200
**0-16-65***	O ****	일반	31,800
**9-11-02***	건****	일반	3,900
**5-22-02***	제****	일반	6,4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02,8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신승호	010719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02,8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8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홍장득	430117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0-07-13***	옵****	일반	150,500
**8-82-01***	서****	일반	657,600
**1-08-64***	튼****	일반	213,200
**1-11-51***	천****	일반	3,600
**1-90-04***	동****	일반	1,900
**1-90-25***	고****	일반	5,800
**1-82-07***	인****	일반	381,000
**4-11-71***	백****	일반	5,200
**1-24-75***	인****	일반	1,900
**1-10-69***	메****	일반	484,670
**9-03-03***	옵****	일반	235,61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140,98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9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  -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홍장득	430117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인별합계금액			2,140,980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
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6세 이하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부양가족(700만원)

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

일련번호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20-

# 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실손의료보험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# ■ 피보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

# 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상품명	보험계약자		수령금액 계
사업자번호	계약(증권)번호	수익자		구궁급꼭 세 -
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	플러스메디컬단체상해보 험(II)	120-81-39185	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 명보험	24,150
202-81-48370	202420****	690915-*****	신재영	24,150
우정사업본부	(무)실손1종종합	690915-*****	신재영	24,150
101-83-02925	701474****	690915-*****	신재영	24,130
인별합계금액				48,300

1.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: 2024년 01~12월)

#### 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학점은행제	***학점은행제	**7-81-99***	일반교육비	300,000
일반교 <del>육</del> 비	비 합계금액	300		300,00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22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남호	080814-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고등학교	***고등학교	**4-83-00***	일반교육비	617,770
일반교육비	비 합계금액	61		617,77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23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승호	010719-*****

■ 교육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교육비구분	학교명	사업자번호	구분	지출금액계
대학교	***대학교	**5-82-04***	일반교육비	7,672,000
일반교육비	비 합계금액	7.		7,672,000
현장학습비	비 합계금액			0

- 1. 아이행복(사랑)카드: 아이행복(사랑)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(정부지원금 제외)이며,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'교육비납입증명서'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.
- 2. 대학(원)교육비 :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.
- ※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(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)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,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공제 한도: 근로자 본인·장애인특수교육비(전액), 취학전 아동·초·중·고등학생(연 300만원), 대학생(연 900만원),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), 현장학습비(초·중·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)

-24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교복구입비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남호	080814-****

■ 교복구입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상호	사업자번호	지출금액 계
***학교	**4-83-00***	27,000
인별합계금액		27,000

-25-

1. 공제 대상 : 중·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

2. 공제 한도 : 학생 1명당 연 50만원

(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50,384,170	42,432,647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41,278,953	263,000	446,200	444,494	42,432,647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일반	41,278,953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전통시장	263,0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대중교통	446,200
신용카드	214-81-37726	비씨카드 (주)	도서공연등	444,494
인별힙	계금액			42,432,647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26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화용	380915-*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26,650	99,000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0	0	99,000	0	99,00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1-86-61717	( 주 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99,000
인별합	계금액			99,00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27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남호	080814-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406,280	480,380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0	0	480,380	0	480,38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1-86-61717	( 주 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480,380
인별힙	계금액			480,38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28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덕희	401203-*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34,200	10,200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0	0	10,200	0	10,20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10,200
인별힙	계금액			10,20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29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선정례	490704-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3,267,780	3,171,180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3,006,770	150,410	14,000	0	3,171,18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1,45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3,006,77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150,410
신용카드	213-86-15419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2,550
인별합	계금액			3,171,18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30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승호	010719-*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342,950	36,300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0	0	36,300	0	36,30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101-86-61717	( 주 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36,300
인별합	계금액			36,30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
949,350	3,246,960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3,246,960	0	0	0	3,246,96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381,530
직불카드 등	375-88-00197	주식회사 카카오뱅크	일반	235,00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2,630,430
인	별합계금액			3,246,96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규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화용	380915-*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0	52,100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52,100	0	0	0	52,10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14-82-08554	신용협동조합중앙회	일반	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52,100
인	별합계금액			52,1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규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남호	080814-****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779,700	745,340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721,340	0	0	24,000	745,34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22,100
직불카드 등	120-88-01280	(주)비바리퍼블리카	일반	699,240
직불카드 등	120-88-01280	(주)비바리퍼블리카	도서공연등	24,000
인	별합계금액			745,34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'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정덕희	401203-*****	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3,508,530	4,769,767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4,235,297	296,920	237,550	0	4,769,767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29-86-38970	(주)이동의즐거움	대중교통	237,550
직불카드 등	104-82-07072	농업협동조합중앙회	일반	15,00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4,220,297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전통시장	296,92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대중교통	0
인	별합계금액			4,769,767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35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선정례	490704-****	

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77,050	72,400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0	0	72,400	0	72,400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129-86-38970	(주)이동의즐거움	대중교통	72,400
직불카드 등	104-86-39742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0
인별합계금액				72,400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박급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36-

# 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승호	010719-*****

##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5,839,812	4,300,314	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4,210,814	89,500	0	0	4,300,314

#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01-81-68693	(주)국민은행	일반	24,900
직불카드 등	527-88-00686	주식회사 카카오페이	일반	47,80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일반	4,138,114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전통시장	89,500
직불카드 등	101-86-61717	(주) KB국민카드	대중교통	0
인	별합계금액			4,300,314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50131-19963462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37-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4,241,540	8,819,510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8,819,510	0	0	0	0	8,819,51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38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재영	690915-*****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
그 님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애
구분	<del>οπ</del>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1,695,940	490,900	550,000	11,00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2,329,400	106,950	15,200	110,000	8,819,510
		0	566,270	824,570	2,119,280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거래	0	0	0	0	0
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39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신화용	380915-*****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3,400	0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0	0	0	0	0	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0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신화용	380915-*****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8	<b>*</b> =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	현금영수증 일반거래	0	0	0	0	0
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1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정덕희	401203-*****	

##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9,200	0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0	0	0	0	0	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2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정덕희	401203-*****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4 79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 일반거래 -	0	0	0	0	0	
	0	0	0	0	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3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선정례	490704-*****	

### 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60,000	9,200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9,200	0	0	0	0	9,20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4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선정례	490704-*****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	월별 공	당제대상금액		
구분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애
<del></del>	σπ	05월	06월	07월	08월	- 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1,000	0	3,00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1,000	0	9,200
		1,000	0	1,200	2,000	
	수증 도서.공연비등거 래	0	0	0	0	
현금영수증		0	0	0	0	0
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5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홍장득	430117-*****	

■ 전년도,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

(단위:원)

2023년 사용금액 합계	2024년 사용금액 합계	
92,290	119,670	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 등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119,670	0	0	0	0	119,67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6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4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홍장득	430117-*****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74 52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에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09월	10월	11월	12월		
현금영수증 일반거래	0	0	37,860	0		
	75,910	0	0	0	119,670	
	0	0	0	5,900	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-47-
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홈택스> 상담·불복·제보>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- 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4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24년 01~12월)

### 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선정례	490704-*****	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***_**	****1	정치자금기부금	7,000	7,000	0
인별합계금액					7,000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